

의안번호	2218672
의 퇴 인	김상욱의원
회 답 일	2026. 5. 6.
추계번호	26C2431
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1억 7,000만원(연평균 2억 3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형태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(안 제7조)	234	234	234	234	234	1,170	23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지역신문발전위원회)	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의2(위원장 등) 및 안 제12조의3(감사)	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를 상임으로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지역신문발전위원회)	○	
2	안 제8조의2(위원장 등) 및 안 제12조의3(감사)	×	- 유사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(2026년 기준 사업비 118억원, 기금운용비 약 5억원) 등을 고려할 때, 위원장과 감사를 상임으로 두는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
-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·운용을 위한 예산 중 기금운영비(5억 5,400만원)를 제외한 부족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회계에서 추가 집행(2026년 기준 2억 3,400만원)이 이루어지고 있고, 재단법인 전환 후 해당 비용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(안 제7조)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하고,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·운용을 위한 예산 중 일부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【표 2】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예산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현황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년 예산		
	합계	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예산	추가집행 (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회계)
□ 합계	788	554	234
○ 인건비	503	347	156
■ 보수		(직원5명 1~8월 급여)	(직원5명 9~12월 급여, 직원1명 1~12월 급여)
○ 경상비	285	207	78
■ 운영비	232	150	10
		(회의, 업무협의, 공공요금 등)	(전문위원 자료조사)
		50	22
		(전문위원 자료조사)	(정책연구-저널리즘품질조사)
■ 고용부담금	53	7	46
		(직원1명)	(직원1명 부족분+직원5명)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2026년 기준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회계에서 추가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2억 3,400만원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국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

□ 추계결과,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·운용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

【표 2】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형태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형태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(안 제7조)	234	234	234	234	234	1,1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(과장 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